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4308 제안연월일: 2024. 9.

<u>번호</u> 4506 제 안 자: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 법률안 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제안일 | | 심사경과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2200693 | 강명구의원 | 2024.6.20. | 상정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8.26.) | |
|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소위 심사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8.) | |
| 자본시장과 | | | |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8.26.) |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01504 | 김용만의원 | 2024.7.8. | 소위 심사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8.) | |
| 자본시장과 | | | |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8.26.) |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01897 | 권성동의원 | 2024.7.18. | 소위 심사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8.) | |
| 자본시장과 | | | 2024.8.5. |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8.26.) |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02556 | 윤한홍의원 | | 소위 심사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8.) | |
| 자본시장과 | | | |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8.2 |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02945 | 강훈식의원 | 2024.8.19. | 소위 심사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8.) | |
| 자본시장과 | | | | |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8.26.)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02974 | 박상혁의원 | 2024.8.20. | 소위 심사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8.) | |

나.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8.) 는 위 6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 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 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 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불법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 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 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 록 함(안 제180조의5제3항 신설).
-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80조의 6 신설).
- 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 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 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 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 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6조의2 신설).

- 마.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 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 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 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26조의3 신설).
- 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 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 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443조).
-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6조).
- 사.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요구 위반, 제한명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거래제한대상자의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9조).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4의 제목 중 "매출에"를 "매출 등에"로, "주식"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의5의 제목 중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을 "대차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 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 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7조제1항 중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을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 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 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으로,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를 각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로, "주식을"을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로, "주식의"를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으로, "그 주식처분명령이"를 "그 처분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처분명령을"을 각각 "처분명령을"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8편제3장에 제426조의2 및 제4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이하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 금융회사(이하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 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
-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 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매매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

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 자상품 계좌정보
-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

- 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 야 한다.
-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 자상품의 처분명령
-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 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 ·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재임 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기준, 거래제한대 상자 통보 방법·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배"를 "4배"로, "5배"를 "6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배"를 "6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제449조제1항 중 제39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6 · 제39호의7 및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 ·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7조,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39조, 제446조, 제449조제1항제48호의2 부터 제48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증권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대차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차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제18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 |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 |
| 집 또는 <u>매출에</u> 따른 <u>주식</u> 취 | 집 또는 <u>매출 등에</u> 따른 <u>증권</u> |
| 득 제한) (생 략) | 취득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
| | 부분과 같음) |
| <u><신 설></u> | 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
|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 |
| | 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 |
| | 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 |
| | 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 |
| | 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 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 |
| | 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 |
| | 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 |
| | 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 |
| | 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 |
| | <u>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u> |
|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
| |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
| |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
| <u>대차거래정보 보관 등</u>) ① · ② | <u>대차거래</u>) ① · ② (현행과 같 |

(생 략)<신 설>

<신 설>

<신 설>

음)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 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 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 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 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 식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 여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 하고, 그 기한까지 주식처분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 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u>그 법인이 제1항에</u> 따른 조치 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 이내에 그 <u>주식처분명령을 이</u> <u>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u>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처분명령 을 이행하지----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 ------주식 또는 금융투 자상품을----------처분명령을 이행 -----<u>주식</u> 또는 금융

<u>투자상품의</u>-----

- ② ~ ③ (생략)
- ④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 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u>주식처분명령</u>을 받은 자가 <u>주식처분명령을</u>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장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 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부터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

| <u>처분명령을</u> |
|------------------------------------|
| <u>그 처분명령</u> <u>이</u> |
| |
| ⑤ <u>처분명령을</u> <u>처분명령을</u> |
| |
| ⑥ (현행과 같음)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 - <u>제180조의6</u> |
| |

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2. (생략) ④ ~ ⑧ (생략)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
|-----------------------------------|
| ③ |
| |
| |
| |
| <u>제180</u> 조의 <u>6</u>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 ④ ~ ⑧ (생 략) |
|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 |
| 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 |
| 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 |
| 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 |
| <u>74, 71100 4 4 6 71100 4 74</u> |
| 를 위반(이하 이 장에서 "특정 |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있다.

-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등을 위해 지급정지를 계속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한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알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한다.

-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 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한다.

-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 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 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 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 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 지 아니하는 경우
-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 8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있다.
 -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매매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 이라 한다)의 임원(「상법」 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 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 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 의 선임·재임(在任)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이익의 규모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 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 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

<u>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u> 통보하여야 한다.

-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

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
·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재임제한대
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
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재임
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
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경우: 해당 임원선임·재임제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 기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및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기 의 정보교환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 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 |
|-------------------------|
| 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 |
| 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 • 절차, |
|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
| <u>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u>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 |
| 고자 보호) ① |
| |
| |
| |
| |
| |
| |
| 제180조의6 |
| |
|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
| 의 정보교환 등) ① (현행과 |
| 같음) |
| ② |
| |

하대사자이 체이 ㅇ구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 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 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 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 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 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 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 ⑤ (생 략)

-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지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생략)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 는 경우

| <u>제180조의6</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세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 |
| |
| |
| 1 /귀의귀 귀 () |
| 1. (현행과 같음) |
| 2 |
| |
| |

가. ~ 마. (생 략) <<u>신 설></u>

<신 설>

<u>바.·사.</u> (생 략)

3. (생략)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기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이하인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1. ~ 10. (생략)
- ② 제1항 <u>각 호(제10호는 제외</u> 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 바.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 |
| <u>정지 요구</u> |
|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 |
| <u>명령</u> |
| <u>아.·자.</u> (현행 바목 및 사목과 |
| 같음) |
| 3. (현행과 같음) |
| 제443조(벌칙) ① |
| |
| |
| |
| <u>4</u> भी <u>6</u> भी |
| |
| |
| |
| |
| |
| <u></u> 6期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
| ② <u>각 호의</u> |
| |
| |

| 이상인 | 경우 | 에는 | 제1항의 | 징역 |
|------|----|----|------|----|
| 을 다음 | 각 | 호의 | 구분에 | 따라 |
| 가중한다 | ₽. | | | |

- 1.·2. (생략)
- ③ (생략)
-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7. (생략)
 -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하지의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63. (생 략) <u><신 설></u>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
|---|
| |
| 1. ~ 47. (현행과 같음) 48 |
| |
| <u>제180조의6</u> |
| 제446조(벌칙) |
| |
| |
|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 |
| |

-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4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 1. ~ 39의4. (생 략)
 - 39의5.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 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40. ~ 48. (생략) <신 설>

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 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1. ~ 39의4. (현행과 같음)
-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 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 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 니한 자
-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 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 나,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 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 지 아니한 자
-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 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

40. ~ 48. (현행과 같음)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신 설>

<신 설>

<u><신</u>설>

<신 설>

49. (생략)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9. (생 략)

<신 설>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 한 자
-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자를 해임하지 아니한자
-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1. ~ 19. (현행과 같음)
-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 | 금융회사 |
|---------------------|----------------------|
| <u> <신 설></u> |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 |
| | 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 |
| | 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 |
| | 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 |
| | <u>니한 자</u> |